

예산총칙

제1조 :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418,526,876	12,555,806
1. 일반회계	405,111,424	12,153,343
2. 특별회계	13,415,452	402,464
의료보호기금	1,029,762	30,893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	2,099,383	62,981
주차장	8,718,940	261,568
주거환경개선사업	325,710	9,771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606,525	18,196
지하수관리	635,132	19,054

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 :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.

제4조 : 계속비사업은 없음.

제5조 :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,100,000천원이다.

제6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3,174,482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
재무활동 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,
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